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### 월

####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영향

	도입 전	도입 후
과세 대상	1만5000명	15만명
세 부담	1조5000억원	3조원

### 화

#### 신탁 수익권을 활용한 증여 방식

① 증여하려는 부동산 자산에 신탁 설정



② 발생한 신탁 수익권을 기반 세감면 법인 전환  
(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)



③ 자녀를 대주주로 한 법인 별도 설립



④ 자녀의 법인에 세감면 법인(②)의 지분 양도



##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

구분	내용
대상	<p>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(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)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(주식 등)을 2008.11. 이후 증여(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)받고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* 가업승계 후 가업승계 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(가업승계 당시 해당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)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</p> <p>② ①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.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가.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(동시 증여):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나.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(순차 증여):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부과되는 증여세액</p>
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</li> </ul>
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적용 불가</li> </ul>
과세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% 적용 * 증여세 과세가액 = 증여한 주식가액 × (1 - <math>\frac{\text{사업무관 자산 가액}}{\text{총 자산가액}}</math>) (사업무관 자산가액비율 제외함)</li> </ul>